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05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이수진·백혜련·전진숙
김문수·서영석·전종덕
송옥주·남인순·임미애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

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 마.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함(안 제32조, 제39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생”이란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

상을 말한다.

2.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3. “인구전략”이란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감소, 복지제도 안정성 저하, 지역별·업종별 인력의 불균형, 학령기 인구 및 병역 자원의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응하거나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말한다.

4.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인구변화의 경제·사회적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경제·사회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및 세대 간·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임과 권리)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

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노후 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근로자의 직장환경이 결혼, 임신, 출산과 가족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화 추세 및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제·사회적 구조개혁 시책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

구위기를 가져오는 경쟁압력·고용·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구조개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의 자립과 사회진출 등 생애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중받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니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3조(모자보건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고령사회 시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세대 간 통합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효행을 장려하고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고령자 고용촉진과 노후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

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노후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노후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3조(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중장년·노년 등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 강화를 포함하여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관련 산업과 기술, 고령친화산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필요한 용구와 용품, 서비스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육·의료·주거 및 교통·문화 등 지역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호 간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인구교육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1조(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전략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한다.

제32조(인구전략 기본계획)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구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3. 장래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4.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예산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6.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방향
7.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경제·사회적 영향의 분석범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다음 연도의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 관련 사업(일·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세대별 인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매년 4월 30일까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방향

2.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와의 협의를 기초로 작성한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방향

2.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그 밖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절차·방법, 제3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업무의 협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인구전략위원회)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및 변화추이 예측
2.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인구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중 유사·중복 사업 등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7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저출생 및 고령화와 지역·이민·신기술 등 인구문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1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인구전략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인구전략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4호가목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⑧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국회보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인구정책의 평가 및 조정 등

제39조(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인구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대한 지원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지원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대한 지원
4. 인구정책의 평가등에 대한 지원
5. 지역별 인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 및 평가
6.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 및 교육 등 각 생애주기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
7. 제43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정책에 대한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수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인구전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44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조사·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②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 위원회”로 한다.

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⑦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⑧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